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나305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 종결 2016. 1. 14.

판결 선고 2016. 2. 18.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1. 26. 선고 2013가단489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안동시 H 답 7780㎡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 D, E, F, G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3. 26.(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8. 3. 19.'은 오기로 보인다) 접수 제109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B, D, E, F, G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 10. 26. 접수 제258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 19행의 '안동시H 답 77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안동시 H 답 7780㎡(원래 안동시 H답 2202㎡인데, 2008. 3. 26. L 토지와 합병되어 답 3819㎡가 되었다가 2012. 6. 25.M 답 2040㎡, N 답 1921㎡와 합병되어 답 778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제3면 제3행의 '2008. 3. 19.'를 '2008. 3. 26.'로, 같은 면 제10행의 '망인이 원고에'를 '원고가 망인에'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1행에서 제13행까지의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이 되는 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사공민, 판사 강태호